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가단2097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모친이다.

나. B은 2023. 3. 현재 종합소득세 5건 및 부가가치세 9건 총 260,719,97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상납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부가가치세	2015.1기	2015.06.30.	2021.09.07.	2021.10.05.	621,540	640,180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06.30.	2021.09.07.	2021.10.05.	6,150,330	7,118,870
부가가치세	2016.2기	2016.12.31.	2021.09.07.	2021.10.05.	9,017,270	10,437,320
부가가치세	2017.1기	2017.06.30.	2021.09.07.	2021.10.05.	28,943,360	33,501,850
부가가치세	2017.2기	2017.12.31.	2021.09.07.	2021.10.05.	4,109,230	4,756,270
부가가치세	2018.1기	2018.06.30.	2021.09.07.	2021.10.05.	6,210,800	7,188,980
부가가치세	2018.2기	2018.12.31.	2021.09.07.	2021.10.05.	20,481,990	23,707,810
부가가치세	2019.1기	2019.06.30.	2021.09.07.	2021.10.05.	2,745,750	3,178,150
부가가치세	2019.2기	2019.12.31.	2021.09.07.	2021.10.05.	73,730	75,940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21.11.01.	2021.12.14.	714,230	296,750
종합소득세	2016년	2016.12.31.	2021.11.01.	2021.11.30.	32,493,860	37,124,170
종합소득세	2017년	2017.12.31.	2021.09.09.	2021.10.15.	55,106,320	63,372,140
종합소득세	2018년	2018.12.31.	2021.09.09.	2021.10.15.	30,139,940	34,660,770
종합소득세	2019년	2019.12.31.	2021.11.01.	2021.12.04.	2,811,940	34,660,770
합계					199,620,290	260,719,970

다. 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대전동부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거래일자	금액(원)	입금계좌	예금주
2020.08.26.	5,000,000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피고
2020.09.25.	5,000,000		
2020.10.27.	5,000,000		
2020.12.29.	5,000,000		
2021.01.26.	10,000,000		
2021.02.26.	10,000,000		
2021.03.26.	10,000,000		
2021.04.27.	10,000,000		
2021.05.26.	10,000,000		

합계

70,000,000

라. B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보다 앞서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총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에게 송금하고, B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의 비사업자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인바, 위 계좌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B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으로 피고의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B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 계좌로 입금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채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별 지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계좌이체(증여) 내역

순번	연월일	계좌이체 금액 (단위: 원)	출급계좌	입금계좌
1	2020. 08. 26.	5,000,000	대전동부 새마을금고	KEB하나
2	2020. 09. 25.	5,000,000		
3	2020. 10. 27.	5,000,000		
4	2020. 12. 29.	5,000,000		
5	2021. 01. 26.	10,000,000		
6	2021. 02. 26.	10,000,000		
7	2021. 03. 26.	10,000,000		
8	2021. 04. 27.	10,000,000		
9	2021. 05. 26.	10,000,000		
합계		70,000,000		

